

변경대비표

■ 펀드명 : 하나인덱스플러스액티브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■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25년 04월 25일

■ 변경사항

- 환매수수료 삭제
-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

■ 간이투자설명서

구분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요약정보 - 투자비용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요약정보 - 투자실적추이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요약정보 - 운용전문인력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요약정보 - 환매수수료	환매수수료 삭제	- 30일 미만 : 이익금의 70% -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	<u>없음</u>

■ 투자설명서

구분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5. 가. 운용전문인력	정기갱신	-	<u>정보 업데이트</u>
10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정기갱신	1) 이 투자신탁은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(VaR)이 31.58% 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(높은위험)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	1) 이 투자신탁은 최근 3년간 일간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(VaR)이 35.57% 임에 따라 6 등급 중 2 등급(높은위험)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.
11. 나. 환매	환매수수료 삭제	3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변경 전)	3)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변경 후)

환매수수료	<p>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,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. 단,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.</p> <p>- 30일 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70%</p> <p>- 30일 이상 90일 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30%</p>
--------------	--

변경 후)

구분	중도환매허용	중도환매불가	중도환매시 비용발생
환매가능여부	○		
환매수수료	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		

■ 신탁계약서

구분	변경사유	변경 전	변경 후
제 15 조(자산 운용지시 등)	기재 상세	<p>①~② <생략>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.</p> <p><추가></p> <p>④ <생략></p>	<p>①~② <현행과 동일>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메일,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시가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④ <현행과 동일></p>
제 27 조(환매 가격 및 환매방법)	환매수수료 삭제	<p>①~② <생략>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환매수수료 및</u>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 <생략></p>	<p>①~② <이하동일></p> <p>③판매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<u><삭제></u>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.</p> <p>④ <이하동일></p>

<p>제 41 조(환매 수수료)</p>	<p>환매수수료 삭제</p>	<p>①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(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</p> <p>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이하 본항에서 "이익금"이라 한다)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.</p> <p>1. 30 일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70%</p> <p>2. 30 일 이상 90 일미만 환매시 : 이익금의 30%</p> <p>③ 판매회사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한 "수익증권저축약관"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</p>
<p>제 43 조(신탁 계약의 변경)</p>	<p>환매수수료 삭제</p>	<p>①~③ <생략></p> <p>④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</p>	<p>①~③ <이하 동일></p> <p>④ 수익자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 2 항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</p>

		말한다)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<u>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</u> 다만,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말한다)부터 1 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<u>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한다.</u> 다만, 제 3 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 45 조(집합 투자기구의 해지)	환매수수료 삭제	①~② <생략> ③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 41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④~⑤ <생략>	①~② <이하 동일> ③(삭제) ④~⑤ <이하 동일>
부칙	-	(신설)	<u>부 칙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의 변경사항은 2025 년 04 월 25 일부터 시행한다.</u>